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고 제2024 - 36호

「울릉군 숙박시설 클린베딩」 사업 모집 공고

경상북도에서는 울릉군의 깨끗하고 관광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더 머물고 싶은 관광경북 실현을 위해 「울릉군 숙박시설 클린베딩」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. 3. 11.

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

1. 사 업 명 : 울릉군 숙박시설 클린베딩

2. 사업시행 : (주최)경상북도, 울릉군/(주관)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

3. 사업대상

ㅇ 숙박업소

-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등록업체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**관광숙박업(호텔, 휴양콘도미니엄)**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**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, 한옥체험업** 및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**관광펜션업**

4. 신청자격

ㅇ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

ㅇ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(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3년간 운영에 대한 건물 소유주(임대인)의 동의를 득한 업체)

신 청 제 외
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,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
ㅇ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해당 사업자
ㅇ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등 최근 3년간(21 ~ 23년) 유사목적 사업으로 보조금 또는 기금을 국가나 경상북도(시·군포함),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
ㅇ 기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
5. 지원금액 및 조건

○ **(숙박업)** 개소당 최대 8백만원, 총사업비 기준 20% 이상 자부담

6. 세부 지원내용

구 분	지 원 내 용	지원한도
필 수	**① 침구류, 벽지**	**8백만원**
선 택	② 조명	
	③ 홍보물거치대	
	④ 실내안내판	

※ 사업 보조금은 공급가액만 지급, 부가세는 자부담

※ 전자제품류 지원 불가

※ 시설환경 개선 시 유의사항

○ **'침구류'와 '벽지개선'이 필수사항**으로 반드시 개선하여야 하며, 조명, 홍보물 거치대, 실내안내판은 선택 개선사항입니다.

- 단,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로서 최근 2년 이내 벽지개선한 사실이 인정되어, 울릉군수의 추천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필수항목 침구류 단일 신청가능

○ 과다견적 시 선정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7. 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

○ **(공고기간)** 2024. 3. 11. ~ 4. 5.

○ **(접수기간) 2024. 3. 25. ~ 4. 5. (09:00 ~ 18:00)**

※ 토·일요일, 공휴일에는 방문 접수 받지 않습니다.

○ **(접수처) 울릉군 관광문화체육실 관광기획팀**

○ **(접수방법)**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(등기)

※ 우편(등기) 접수는 접수기간 종료일 마감시간 전 도착분에 한합니다.

○ **(신청서류)**

① 보조사업 신청서(붙임1)

② 사업계획서(붙임1-1) 및 견적서 각 1부

※ 사업계획서는 자격을 갖춘 업체의 견적서에 근거하여 작성

③ (숙박업)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법에 의한 등록증 각 1부

* 관광사업 등록증, 영업신고증 등

④ 이행각서(붙임1-2) 1부

⑤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(현황도면 포함) 각 1부

⑤-1. **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**

: 건물주의 동의서(붙임1-3) 및 인감증명서, 임대차계약서(사본) 각 1부

※ 숙박업 실내안내판, 홍보물 거치대, 침구류 구입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(사본)만 제출 가능. 단, 벽지, 조명은 모두 제출

⑤-2. **임대차 계약 없는 가족경영의 경우**

: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

⑥ 사진대장(시설환경개선 전 사진) 1부

※ 사진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촬영 및 설명

⑦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포함)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
⑧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
⑨ 개인정보동의서, 청렴이행서약서, 중복신청금지확약서 각 1부

※ 신청서식은 경상북도, 울릉군 및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신청서류 등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8. 심사 및 선정 기준

○ **(심사방법)**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적성성에 대하여 1차 서류심사를 하고, 2차 현장심사 후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.

○ **(선정기준)**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.

○ **(선정결과)** 개별통보

※ 선정발표 이후, 바로 진행하실 수 없으며, '업체등록'과 '개별승인' 이후 진행하셔야 합니다.

9. 보조금 신청 및 지원

○ **(완료기한) 개선 승인일 ~ 24. 10. 31.**

○ **(보조금 신청)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보조금 신청**

○ **(보조금 지원) 정산서류 및 현장확인(신청내용과 시공내용 확인) 후 지급**

※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대금을 공사업체에 선 지급

○ **(보조금 신청서류)**

① 보조금 신청서 1부 [붙임 2]

② 사업 결과 보고서 1부(숙박업 [붙임 2-1])

③ 거래명세표 1부(공사비 등)

④ 무통장 입금증(또는 통장사본) 또는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1부

⑤ 전자세금계산서 1부

⑥ 보조사업자 및 공사·판매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각 1부

※ 상호 간 금융거래 확인용

⑦ 신청인, 공사·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각 1부

⑧ 개선중(납품) & 완료 동영상(유형별로 30~60초 촬영 후 카카오톡 또는 웹하드에 업로드)

10. 향후 추진일정

① 사업 공고(3.11 ~ 4.5)	ㅇ도, 울릉군,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
↓	
② 신청서 접수(3. 25 ~ 4. 5)	ㅇ시·군으로 직접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(등기)
↓	
③ 지원업체 1차심사 및 2차 현장심사 (4~5월 중)	ㅇ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진행
↓	
④ 결과통지(6월 중)	ㅇ개별 통보
↓	
⑤ 온라인 사업설명회(6월 중)	ㅇ사업실시 방법 및 가이드라인, 정산방법 등 안내
↓	
⑥ 지원업체 사업실시(6~10월)	ㅇ울릉군 개선 승인 ㅇ승인 이후, 선정된 보조사업자 사업 시작
↓	
⑦ 콜센터 운영 및 컨설팅(6~12월)	ㅇ컨설팅 실시 : 6월부터 ~ ㅇ콜센터 운영, 사업 전반 컨설팅
↓	
⑧ 정산서 접수, 보조금 지급(~12월)	ㅇ정산서 접수,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

※ 상기 일정은 심사위원회 심사여건 및 사업 추진여건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11. 유의사항 <사업신청 전 필독>

ㅇ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의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
ㅇ **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(사업주가 자부담으로 대금을 공사업체에 선지급) 정산서 및 현장 확인 후 사업주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**

※ 보조금은 신청내용과 실제 공사내용을 확인한 후 계좌이체

ㅇ 보조금 지급 결정액은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○ 사업 완료 후 시공 및 개선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의 상호 계약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.

○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○ **불법건축물, 과다견적 및 문서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, 보조금 지원(결정)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**

○ **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일정기간(3년)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,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조치 됩니다.** 다만, '영업부진,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폐업, 지위승계로 동종업 유지'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○ <u>아래 사항의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또는 취소</u>될 수 있습니다.

-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영업자
-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(생활·주거공간)
- 공사기한 및 정산서류 제출 마감기한 불이행 사업자
-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(일) 이전에 시행한 경우
- 사전승인 없이 공사업체 및 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
- 당해연도 타기관(도, 시·군 및 유관기관 등) 동일분야 지원하여 선정된 경우
- 유사목적 사업으로 보조금 또는 기금을 국가나 경상북도(시·군 포함)로 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

○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되며,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○ **(문의처)** 기타 상세내용은 **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마케팅전략팀 (☎054-740-7213)**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**Q&A**

▪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주요질의, 답변 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Q1.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은?

A1. 울릉군 숙박시설 클린베딩사업은 도내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상 숙박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 침구교체 및 벽지 개선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.

Q2. 침구류, 벽지 등 적정가격 수준이 있는지?

A2. 일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, 시장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일 경우 선정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Q3. 총사업비 기준, 자부담 20%인데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면?

A3. 음식업체 경우 지원한도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, 총사업비 기준 20% 이상 자부담하여야 합니다.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됩니다.

※ 예시 1)

구분	총사업비	보조금			자부담
		소계	공급가액 (실 지원금)	부가가치세	
금액(원)	8,000,000	6,400,000	5,818,182	581,818	1,600,000

☞ **총사업비 8,000,000원**인 경우 **보조금 6,400,000원** 중 **공급가액 5,818,000원(백원이하 절사)을 지원**하게 되고, **자부담은 1,600,000원입니다.** ※백원이하 절사분, 부가가치세 업주부담

※ 예시 2)

구분	총사업비	보조금			자부담
		소계	공급가액 (실 지원금)	부가가치세	
금액(원)	30,000,000	8,000,000	7,272,727	727,273	22,000,000

☞ **총사업비 30,000,000원**인 경우 보조금 **지원한도액은 8,000,000원으로, 실 지원금은 공급가액 7,272,000원(백원이하 절사)**이며, 나머지 사업비는 **자부담 22,000,000원**입니다.

Q4. 보조사업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?

A4.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**울릉군청 관광담당 부서**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Q5. 침구류 개선이 필요 없는 경우, 벽지만 교체해도 되는지?

A5. 클린베딩사업의 경우, 반드시 ① 침구류와 벽지를 개선하여야 지원이 가능 합니다.

예) ◦ 침구류 + 벽지 → 지원 가능
◦ 침구류 + 벽지 + 홍보물거치대 → 지원 가능
◦ 벽지 + 조명 → **지원 불가**
◦ 조명 + 시설안내판 → **지원 불가**

Q6. 전년도에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받아 조명만 개선한 경우 보조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?

A6.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도에 이미 보조받은 경우 사업내용을 달리하여도 신청은 불가합니다.

Q7. 시설 개선 착수 시기와 완료 기간은?

A7. 착수 시기는 **개선승인 통보** 이후, 각자 여건에 따라 시작을 달리할 수 있으나, **10월 31일까지는 완료**하여야 합니다. 불가피할 경우,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여야 합니다.

Q8. 공사 시작 전에 선수금 또는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?

A8. 본 보조사업은 사업 완료 후 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며, 선수금 또는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
Q9. 업체는 지정해 주는지?

A9.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격을 갖춘 업체의 견적을 받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, 견적 받은 업체에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신청 당시와 달리 시공업체나 견적 등이 부득이 변경될 경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.